

#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545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3월 8일  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목적 조문안(안 제1조)의 “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”을 정의 조문안(안 제2조)의 어순과 일치시키고, 표창 조문안(안 제5조)의 내용을 구체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안 제1조(목적) 중 “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”을 안 제2조(정의)의 어순과 맞추어 “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”로 하고, 안 제5조(표창)의 제목을 “포상”으로 하며 표창 대상 범위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함.

#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을”을 “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지지부를”로 한다.

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포상)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지지부 활동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## 〈 수정안 조문 대비표 〉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<u>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</u>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표창)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<u>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 지부</u>를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제5조(포상)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활동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u></p>

##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를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‘한국자유총연맹’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)** 서울특별시장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)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건전한 안보관과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
2.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시책 수립, 시행
3.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
4.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기반 확충사업
5.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및 활동비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

**제4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** 시장은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포상)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활동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6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,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